

# '25년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재공고

서울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 .

## 서울특별시

1. 사업명 : '25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 보조금 지원
  3. 지원대상 : '22.12.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
  4. 지원규모/예산 : 585대 / 1,972백만원
-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5. 지원금액 : 가스열펌프 엔진형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가스열펌프 엔진형식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	보조금 지원액(지원 상한액)			자부담금
		계	국비	지방비	
삼성 3Y	3,199	2,880	1,600	1,280	319
삼성 4Y	3,089	2,781	1,545	1,236	308
LG NU	2,739	2,466	1,370	1,096	273
LG D4BB	3,248	2,923	1,624	1,299	325
삼천리 3C	3,491	3,142	1,746	1,396	349
삼천리 4C	3,691	3,322	1,846	1,476	369
산요 K25	3,876	3,488	1,938	1,550	388

※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이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결과('23.7) 등을 바탕으로 엔진형식별 최저가로 책정

※ 계약사항에 따라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와 실제 설치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6. 신청기간 : '25. 5.19.(월) 09:00 ~ 6.11.(수) 18:00

7.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 접수 시 마감일('25. 6.11.)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

### 8. 제출서류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 1 서식]

○ 구비서류 각 1부(원본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도장 사용

### 9.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후 GHP 철거 등 지원사업장의 취소분 발생시 후순위(예비) 사업장에 보조금 지원자격이 부여됨. 단, 엔진형식 단가가 상이하여 취소된 금액을 초과할 시 취소된 금액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분은 사업장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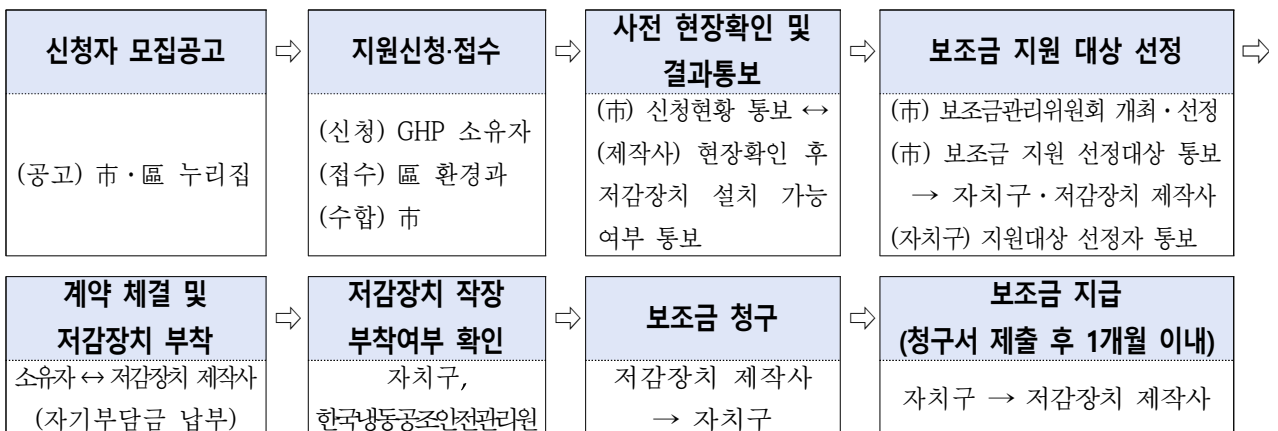
### 10.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 11. 선정 결과통보

○ 일시 : '25. 7. 7.(월) (예정)

○ 방법 : 자치구 및 저감장치 제작사 통보,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12. 보조금 지원절차



### 13. 보조금 반납

-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함
  - 의무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 GHP 사용기간은 냉동기검사(GHP 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 ※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사후검사관리(붙임 12)에서 3회 이상 부적합된 경우,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에게 탈거 명령 및 보조금 회수

### 14. 기타 유의사항

-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및 배출시설 제외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 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 15. 문의처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시·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환경부서 연락처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1	종로구	환경과	02-2148-2467
2	중구	환경과	02-3396-5623
3	용산구	맑은환경과	02-2199-7665
4	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5498
5	광진구	환경과	02-450-7808
6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37
7	종랑구	맑은환경과	02-2094-2442
8	성북구	환경과	02-2241-3046
9	강북구	환경과	02-901-6754
10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42
11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02-2116-3210
12	은평구	기후환경과	02-351-7635
13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02-330-8796
14	마포구	맑은환경과	02-3153-8392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02-2620-4861
16	강서구	녹색환경과	02-2600-4008
17	구로구	환경과	02-860-2875
18	금천구	환경과	02-2627-1522
19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63
20	동작구	환경과	02-820-9973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63
22	서초구	기후환경과	02-2155-6449
23	강남구	환경과	02-3423-6229
24	송파구	맑은환경과	02-2147-3282
25	강동구	기후환경과	02-3425-5934

-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연번	저감장치 제작사	연락처
1	LG전자(주)	02-2673-0361
2	삼성전자(주)	1588-3773
3	(주)삼천리ES	02-368-3497
4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031-940-2561
5	(주)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6	(주)세라컴	02-744-1777 / 02-6929-1777

16.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제작사 및 부착가능모델 현황 : 붙임참조

- 붙임 1. [붙임 1]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붙임 2] 이행확인서 1부.  
3. [붙임 3] 사후관리검사 이행동의서 1부.  
4.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5. [붙임 5] 보조사업 승인결과 통보서 1부.  
6. [붙임 6]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7. [붙임 7]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1부.  
8. [붙임 8]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1부.  
9. [붙임 9] 저감장치 설치 위치 1부.  
10. [붙임 10] 위임장 1부.  
11. [붙임 11]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12. [붙임 1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1부.  
13.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별첨).  
14.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제작사 및 부착가능(인증완료) 모델 현황 1부. 끝.



【붙임 2】

## 이행확인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인감 : )

상기 본인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저감장치 설치 후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2년 이내 GHP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GHP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25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구청장 귀하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익년부터 2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붙임 5】**

**보조사업 승인결과 통보서**

귀하께서 신청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소재지(연락처)	( 전화 : )		
④ 부착예정 가스열펌프(GHP)				
제조사	모델명	엔진형식	제조번호	
⑤ 부착기간	2025. . ~ 2025. . (소요기간 : 개월 일)			
⑥ 예상 보조금	천원			
<p>위와 같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시설의 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GHP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GHP 사용기간별 반납율 >

GHP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1. GHP 사용기간은 냉동기검사(GHP 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1. 일반 사항

사업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소재지)			
G H P	제 조 사		모 델 명	
	제 조 년 월		제 조 번 호	
	엔 진 모 델 명		용 량(출력)	
	가 동 시 간	“여 백”		

2. 저감장치 동일성 확인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번호	확인결과
품 명	인증번호	제품번호		
				일치/불일치

3.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NOx(ppm)	THC(ppm)	CO(ppm)	판정
기 준	15	90	90	적/부
측정결과				

※ 측정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4. 종합 의견

2025년    월    일

전문기관

검사자 :

(인)